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39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조오섭·강득구·김영주

문진석 • 민형배 • 송갑석

안민석·윤영덕·이용빈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 규정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도로에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는 일단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재불량 화물

자동차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하여 적재된화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해제·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 나. 적재불량 화물자동차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 다.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함(안 제67조제2호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70조제2항제5호·제6호).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3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0항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 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2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 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의3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3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제4항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8호"로 한다.

1의2.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3(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		
	제한단속원(이하 이 조 및 제6		
	2조의3에서 "관계공무원등"이		
	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u>1. 제11조제20항에 따라 덮개·</u>		
	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		
	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전		
	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		
	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1의2. (생략) <신 설>

<u>유한</u>	운송	사업지	나 모	든	해당	차
량을	운경	선하는	<u>(</u>	2수	종사지	누는
정당	한 사	유 없	(0)	제1	항에	따
른 :	조사를	거부	나방	·해	또는	기
피하	여서는	- 아니] 된	[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 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①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 사업자

-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 종사자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제15조의3에 따른 관 계공무원등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3. (생략) <신 설>

3의2. • 3의3. (생략)

4. ~ 7. (생 략)

-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신 설>

2.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2. (생 략)
- <u>4항</u>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u>항 및 제20항</u>-----

아니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 종사자

3의3. • 3의4.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70조(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2. 3. (현행과 같음)

②	

- 1. ~ 4의2. (현행과 같음)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 5. -----제3항, 제4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
 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한 운수종사자

7. ~ 27. (생 략)

③ (생 략)

6 <u>제1항제4호</u>
<u>및 제8호</u>
7.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